

'93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사항 승인(안)

의안 번호	267
----------	-----

제출일자 : 93년 10월 일
제출자 : 안산시장

1. 제안이유

주택전세금의 폭등으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돋기위해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안산시와 한국주택은행안산지점과 체결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한국주택은행과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 체결

3. 협약내용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안) 참조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협약서(안)

안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안산시 거주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응자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 한다.

제 1 조 (계정설치 및 응자한도) (1) 전세자금 응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2)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을"이 응자할 수 있는 한도는 4,7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992년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협약서'와 응자한도액 중 미지원액(2,100만원)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응자대상자 선정등) 응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응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 3 조 (응자한도 및 이율) 응자 한도는 세대당 500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제 4 조 (상환기간) 응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을"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대출할 수 있다.

제 5 조 (응자등) (1) "갑"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응자 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있는 "을"의 점포(출장소 제외)에서 응자받도록 조치한다.

(2) "을"은 응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게 한다.

(3) "갑"이 선정한 응자 대상자에게 응자 취급하는 기간은 '93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 6 조 (응자금 반환의 특약등) (1) "을"은 응자 서류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 할 때에는 전세금 중 응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금에 융자금 납부 기일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 7 조 (사후관리) (1)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2)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상황과 주거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 (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손실보존) (1)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을"이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 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 "2"호의 유보기간(1개월)내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제2항 제1호의 보존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 (4) "을"이 손실을 보전 받고자 할때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결손보전을 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 부터 청구일이 속한날의 익월 말까지 그 결손을 보존하여야 한다.
- (5)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 (기타) (1)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기타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 외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협약 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3.

(갑) 안 산 시 장 (인)

(을) 한 국 주 택 은 행 안산지점장 (인)